



고양환경에너지시설

2022년 주민지원협의체 종합감사보고서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감사 손익곤)

목 차

1. 개요.....	2
2. 일반현황	3
3. 사업현황	4
4. 활동사항	5
5. 지적사항	
가. 운영	7
나. 사업	12
다. 회계	13
6. 개선요구사항	15
7. 성과사항	16
8. 총평.....	17

<약어표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시설촉진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법’
-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 ‘복무규정’

개 요

■ 감사목적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집행 및 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기금 집행과 협의체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협의체 운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감사근거

➤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정관

제8조 제4항

감사는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 여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그 감사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위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감사기간:** 2022. 11. 14.(월) ~ 2022. 11. 30.(수)

■ **감사대상:**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회계

■ **감사범위:** 2022. 1. 1. ~ 2022. 10. 31.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 **감사방법:** 서면 및 현장 확인 감사

■ 주요 감사사항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적정성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진행 여부 및 적정성
- 기금 집행 및 예산·회계처리 적정성

일 반 현 황

1. 2022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현황

구분	계	주민대표	시의원	전문위원
정원	15	11	2	2

※ 2022년 10월 31일 변동사항 없음

2. 2022년 주민감시요원¹ 현황

성명	위촉기간	주소	비고
유경숙	2021.04.01.~2022.03.31.	요진와이시티	
박준상	2021.04.27.~2022.04.26.	원스턴파크2차	
신용화	2021.12.01. ~ 2022.11.30.(1년)	요진와이시티	
전효선	2022.04.01 ~ 2023.03.31.(1년)	요진와이시티	
박승희	2022.04.27 ~ 2023.04.26.(1년)	요진와이시티	
최영무	2022.12.01. ~ 2023.11.30.(1년)	요진와이시티	

3. 2022년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주민대표 현황

성명	위촉기간	주소	비고
이성규	2022.08.01.~2024.07.31.	요진와이시티	
김종표	2022.08.01.~2024.07.31.	요진와이시티	

¹

사 업 현 황

※ 2022. 10. 30. 현재

사업비	구분	예산계획	기금집행	잔액	집행률(%)
일반운영비	인건비	6,949,520	6,950,020	-500	88.62
	위원수당(직책,회의참석)	34,200,000	29,266,000	4,934,000	
	비품,소모품비	1,200,000	1,204,400	-4,400	
	기타 운영비	2,161,523	2,161,523	0	
	법률적지원비용	3,000,000	2,524,017	475,983	
	소계	47,511,043	42,105,960	5,405,083	
소득증대사업	재배시설 지원사업	4,000,000	4,000,000	0	100.00
	소계	4,000,000	4,000,000	0	
복지증진사업	냉,난방비 지원	725,490,000	725,475,000	15,000	98.87
	통학차량 지원	99,000,000	102,143,000	-3,143,000	
	환경·위생시설지원	16,800,000	4,200,000	12,600,000	
	주거시설 개선사업	0	0	0	
	소계	841,290,000	831,818,000	9,472,000	
그밖의 사업	성상조사 샘플링 채취 현장참여	3,000,000	2,449,280	550,720	79.65
	반입폐기물 성상조사	16,590,600	8,650,300	7,940,300	
	현장 견학	15,000,000	11,672,740	3,327,260	
	전문가 자문비용 및 역량강화	5,000,000	9,010,140	-4,010,140	
	이자 및 기타수입	309,803	0	309,803	
	소계	39,900,403	31,782,460	8,117,943	
합 계		932,701,446	909,706,420	22,995,026	97.53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금액(원)	비율(%)	금액(원)	비율(%)	
계	932,701,446	100	909,706,420	97	22,995,026
비고			이자수익포함 (309,803)		

활동사항

1. 회의

정관에 따르면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되고(제11조), 협의체 임원으로만 구성된 임원회의가 있습니다(제12조).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되었고, 임시회의는 시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되었으며, 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정관에 명시적인 근거는 없으나 조례개정 등을 위한 TF회의가 2022. 9. 7.(수)부터 2022. 11. 16.(수)까지 주 1회 이상 개최되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회의(36회)			
정기회의	임시회의	임원회의	TF회의
11회	6회	11회	8회

2. 협의회, 간담회

협의체는 환경에너지시설 설치기관인 고양시, 시·도의원, 입주자대표, 주민감시요원 등과 협의 또는 간담회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협의체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고양시 협의회의	기후환경국장 간담회	시·도의원 간담회	입주자대표 간담회	주민감시요원 및 기금운용심의위원
10회	2회	7회	4회	5회

3. 성상조사

성상조사는 주민감시요원이 처리대상 폐기물이 적절하기 반입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복무규정 14조 제1항). 정관에서 협의체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협의체는 법률상 주민감시요원의 추천권한이 있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 스스로 기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상조사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정관 제13조 제2항 6호). 이에 따라 협의체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보조하면서 성상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감시요원과 함께 폐기물 반입현장에 참여한 것이 4회, 폐기물분석용 샘플링조사에 참여한 것이 2회입니다.

4. 기타 활동

협의체는 그 밖에 여러 활동을 하였는데, 협의체를 알리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2회 실시하고 마을축제를 지원하였으며(백석 흰돌문화축제, 와이시티 어울림축제), 고양시 봉사단체로 신청하여 마을 주거 환경 개선 및 환경보호 모니터링 사업을 하였고, 주민편익시설(백석체육센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1인 시위도 전개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하였으며, 고양시(바이오매스, 식사동크린넷) 및 타 지자체 환경시설(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양산, 제주, 파주)을 견학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백석체육센터)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1인 시위

기간	참여인원
2022. 8. 1 ~ 17(17일)	연인원 50명

2022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시민참여 자원봉사

기간	사업명	지원금	사업실적
2022.5.3. ~ 2022.9.30.(5개월)	마을 주거 환경 개선 및 환경보호 모니터링	270만원	20회 63명 참여

기타 자세한 협의체 활동사항은 첨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지 적 사 항

[운영 관련]

1. 협의체 기능(활동)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설정 필요

협의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체 역할과 권한 역시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위 법률이 정하고 있는 협의체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그럼에도 불구하고,

-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 또는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협의체의 활동이 자칫 법률이 정한 한계를 넘을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유의해야 하나,
- 와이시티 입대이가 협의체에게 소각장 폐쇄 또는 이전을 위해 협의체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고,
- 주민공청회를 포함한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체 내부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협의체가 소각장의 폐쇄 또는 이전을 원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 있었으며, 협의체의 기능과 한계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고,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각장 폐쇄 또는 이전을 둘러싸고 협의체와 입대이가 자칫 갈등관계 또는 대립관계에 있다는 점이 외부적으로 드러났기 때

문에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2. 회의 방해행위에 대한 사전 조치의 미비

협의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구성된 협의기구로서, 기본적으로 회의를 통해서만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의는 각 협의체 위원들이 토론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 최종적으로 협의체 의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협의체는 주민대표 뿐만이 아니라 시의원,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협의체가 곧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통학버스 지원 문제로 와이시티 학부모들이 단체로 회의를 방청하면서 회의가 방해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 때문에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협의체 회의가 여러 번 계속되었고 위원들이 온전히 자유로운 의사로 투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 회의 방청, 방해행위에 대한 규정 등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주민들이 방청하는 이외에 어떤 행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대처하기에 어려운 사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 성상조사 참여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상조사 참여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으로 주민감시요원을 돕는 업무의 일부로 가능합니다. 다만, 협의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보조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 뿐 주도적으로 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폐기물시설축진법 제17조의2 제2항 제4호,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2조를 종합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할 수 있을 뿐 직접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그에 대한 권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또는 그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48²).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주민들은 주민공청회에서 협의체가 끊임없이 성상조사를 함으로써 소각장 가동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4회에 걸친 성상조사 과정에서, 주민감시요원의 요청 또는 지시에 따랐다고 보다는 협의체 위원이 적극적·주도적으로 성상조사에 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폐기물운반 대행업체와의 언쟁이 있었고,
- 적은 가능성이지만 만에 하나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경우, 협의체와 위원들이 법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² 위 사건은 협의체 위원장이 권한없이 쓰레기 처리장에서 들어와서 주민감시요원에게 지시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를 반입하는 차량을 회차시킨 사건으로서, 검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이 결국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무죄의 근거는 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인 피고인이 폐기물 운반 차량의 표본검사를 요청하고 규정에 위반되는 반입차량의 회차를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여러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당 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의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표본검사를 요구한 것이 주민감시요원들에 대한 간섭을 넘어 그들의 업무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현장에서 반입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회차시키는 것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4. 정관 개정의 장기화 및 TF회의 적절성 문제

가. 정관 개정의 장기화 문제

정관은 협의체 조직, 활동을 위한 근본규칙을 정한 것이며 활동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협의체 구성원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라면 활동 초기에 정관 개정 여부를 결정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개정하여 그 정관에 따라 활동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활동 초기인 3월 정기회의에서 최초로 정관개정이 논의되었고, 4월 정기회의에서 개정되었으나,
-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개정 논의를 하여 11월 정기회의에서 사실상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 정관개정에 관하여 활동 초기 한 번에 논의를 하여 정관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6개월 사이에 사실상 두번의 전면 개정이 있었으므로, 활동 초기 정관을 확정하지 못해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나. TF회의를 중심으로 한 정관 개정 논의

정관은 협의체의 근본규칙이므로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협의체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정기회의에서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전면 개정의 경우라면 사전에 개정 내용과 이유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정기회의에서 활발히 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협의체에서 2022. 11.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2번째 정관 개정은 사실상 전

면 개정이었음에도, 문구 조정을 대부분 TF회의에서 논의하였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서 논의하면서 실질적인 논의를 TF회의에서 하고 정기회의에서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 개정 내용과 이유에 대해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기회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정기회의에서 문구 수정을 전부 논의할 경우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므로, TF회의에서 내용을 정하고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는 형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된 측면은 있습니다.

5. 기타 지적사항

가. 사무보조원 근무와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체는 2022. 1. 24. 사무보조원(이의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사무보조원은 주 3회 총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협약체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근무일지에 기재된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 옥외광고물 게시에 따른 위반 통보

고양시는 협약체에 대하여 협약체가 게시한 현수막(내용: 편익시설 실질적 사용 요구 등)이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가 주민지원이라는 협약체 목적에 부합하고 위 처분에 따라 즉시 시정하였으나, 실정법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본 감사에서는, 사업 자체(선정)의 적정성 판단은 감사범위를 벗어나므로, 협의체가 지원하기로 의결한 사업이 그 계획에 따라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지출 관련 서류, 사진 등 서류감사를 기본으로 하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 소득증대사업

2022년 소득증대사업으로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내곡동 4세대에 각 100만원 씩 총 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위 지원사업은 과거에 진행된 적이 없고 소수 특정인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대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았고, 대상자가 원하는 물품(농자재 등)을 구입처를 명시하여 요청하면 협의체가 구입처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수증, 이체내역 등을 통해 구입명세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2. 복리증진사업

1) 주변영향지역 주거시설에 대한 냉난방비를 지원하였고 실제 주민들이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교육문화시설지원사업으로 통학차량 운행비를 지원하였는데, 확인한 결과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탑승도우미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관리상태는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3) 환경·위생시설지원사업으로 세스코(CESCO)에 위탁하여 구충·구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4)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와이시티, 윈스턴파크를 대상으로 노후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3. 그 밖의 사업

1) 성상조사 샘플링 채취 현장참여와 반입폐기물 성상조사가 실제 진행되었으며,
2) 현장 견학 역시 그 목적에 맞게 타 지역 환경시설 및 관련 시설 위주로 견학을 하였고 외유성 견학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3) 협의체 전문가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자문은 협의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 관련]

본 감사에서는, 협의체 지원하기로 한 사업계획대로 기금이 집행되었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처리되었는지가 대상이었는데, 협의체 사무실에서 제공된 수입 및 지출 자료, 영수증 등 근거자료 구비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대체로 양호하였고 근거자료가 모두 구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예산 편성 및 기금 집행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운영비 부족 문제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협의체 운영비가 지원기금의 5%로 제한됩니다(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따라서 연초 사업계획 때부터 사실상 운영비의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영비 규모에 비해 협의체 활동상황이 매우 많고 다양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비 세부항목을 전용하고 위원들에 대해 충분한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세부항목 전용이 문제되지 않는고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인 위원이 양해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운영비 부족 문제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항상 염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지원기금 상향이 현실화된다면 운영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회의수당 지급 문제

현재 개정 정관에 따르면, 회의를 정기회의, 임시회의, 임원회의로 구분하고 있으며, 회의 참석 수당은 회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정관 제13조 제2항 5호 - 회의참석수당 100,000원 (전문위원 200,000원)). 그런데 현재 임원회의는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TF 회의 역시 그 성격상 협의체 운영을 위한 회의임은 분명하나 역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수당 미지급에 대해 임원회의, TF회의 구성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양해하는 것으로 보이나³, 참석수당이 협의체 활발한 운영 및 회의참석 등 수고의 대가라는 점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위원 개인의 배려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 특정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지원금에 대한 관리 철저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사용목적 이외에 특별한 법령상 제한은 없으므로, 특정한 주민들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원기금의 규모와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특정 주민들을 위한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지원 목적을 분명히 하고, 협의체가 구매처에 직접 지급하고 그 근거를 남기도록 하여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의 경우 1) 소득증대 재배시설 지원사업, 2) 통학차량 지원사업이 해당됩니다.

³ 개별 위원의 양해의사가 분명하지 않고 수당 미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개 선 사 항

1. 운영 관련

- 가. 내부적으로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명백히 하여, 외부적으로 무리한 요구 등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 회의 방청 및 방청객의 회의 방해행위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함으로써, 회의 방해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 성상조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감시요원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요구 및 협의를 통해 성상조사에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라. 사무보조원의 실제 근로시간과 급여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정 활동을 함에 있어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회계 관련

- 가. 운영비 부족은 지원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 비중이 한정적인 데 비해 협의체 활동이 많고 다양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나, 지원기금이 상향되지 않는 한 내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 나. 임원회의, TF회의도 협의체 활동을 위한 회의라고 보는 이상, 회의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 특정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그 목적과 사용기금의 투명성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성 과 사 항

1. 협의체의 다양한 활동과 위원들의 활발한 참여
2. 전문가 위원들의 참여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해도 향상
3. 주민공청회, 마을행사 및 성상조사 참여를 통한 홍보
4. 정관 개정을 통한 협의체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동 근거 마련
5.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보장을 위한 노력(중임금지, 처우개선 등)
6. 주민지원기금 상향을 위한 노력: 조례개정안 발의
7.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감시역량 강화
8. 주민편익시설 이용환경 개선
9.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 참여 확대 노력
1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장평가 참여

총 평

수도권 매립지 포화, 다른 지역 쓰레기 반입 거부, 서울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지역 선정을 둘러싼 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폐기물처리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하여 혐오시설로 생각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황임에도, 신규 폐기물시설 건립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정하고 있는 유일한 법정 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협의체의 활동에 대한 타 기관의 시선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6기 협의체는 위원장을 필두로 위원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였고 특히 전문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협의체 역할과 소각장에 대해 법률적·기술적 이해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특히 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최전선에서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의 숙련도와 처우를 개선하고, 숙원사업인 지원기금 상향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올해 협의체의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사업의 진행상황과 투입된 지원기금의 쓰임은 적절했으며 기금 사용에 관한 근거도 충분히 확보되고 있었으므로, 투명한 기금 사용을 위한 임원들과 사무보조원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의체 활동이 많고 다양해지면서 기능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과 분쟁이 발생하거나 성상조사, 홍보활동 등에서 실정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주민지원기금이 상향되어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충분한 운영비가 확보되어 위원님들의 노력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2022년 협의체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며, 내년에도 이번 지적사항을 잘 개선하여 보다 잘 운영되고 더 많은 성과를 내는 6기 협의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